

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심사 보고서

2020. 4. 22.

복지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- 발의자: 홍복조 의원 외 12인(안대국, 김화덕, 윤권근, 김정윤, 박정환, 서민우, 배지훈, 박종길, 이신자, 김태형, 이영빈, 배용식)
- 발의일자: 2020. 3. 23.
- 회부일자: 2020. 4. 9.
- 상정 및 의결: 제270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(2020. 4. 22.)

2. 제정이유

-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달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, 용어의 정의(안 제1조, 안 제2조)
- 나. 달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명칭 및 위치(안 제3조)
- 다.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(안 제4조)
- 라. 운영의 위탁 및 수탁기관의 의무, 위탁의 해지(안 제6조~안 제8조)
- 마. 운영위원회의 구성(안 제10조)
- 바. 사업지원 및 지도·감독(안 제11조, 안 제12조)
- 사. 센터 이용제한(안 제14조)

4. 관계 법령

-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」 및 동법 시행령

5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(전문위원: 박성우)

- 현행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상위법’)에 따르면,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의 정신질환 예방·치료 및 재활 지원 사업(이하 ‘정신건강증진사업’) 등을 통해 이들이 보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련의 제도적 틀과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있음.
 - 상위법에서는 동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방안의 하나로 지자체로 하여금 ‘정신건강복지센터’를 설치·운영(외부 전문 기관에의 위탁 운영 포함)토록 하면서,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조례(나 규칙)을 제정하여 관리하도록 규정(제15조)하고 있음.
 - 달서구 역시 상위법 규정에 따라 「달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(이하 ‘센터’)」를 그동안 운영(학교법인 선목학원, 대구정신병원에 위탁 운영)하여 왔으나, 별도의 달서구 조례를 제정하지는 않았음.
- 금번 조례안은 구 조례 없이 운영되어 온, 동 센터 운영 방식에 대해 법률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한편, 내실 있는 센터 운영을 위한 구체적 틀을 마련하려는 취지에서 의원 발의된 제정 조례안.
- 조례안 각 조문들을 살펴볼 때, 일련의 상위법 규정을 벗어나지 않고 있으며, 또한 센터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위탁 운영의 근거(안 제6조에서 안 제9조)를 마련하는 한편, 센터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구성(안 제10조)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, 조례안에 대해 특별히 논란의 여지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6. 질의 및 답변요지: “특이사항 없음”

7. 토론요지: “특이사항 없음”

8. 심사결과: 원안가결